

1.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0391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대상·절차, 자동차제작자등의 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성능인증의 절차 및 성능인증 변경신고의 대상·절차 등 신설(안 제 21조, 제22조,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 나. 적합성 승인의 절차 및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의 대상·절차 등 신설(안 제23조, 제24조,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
- 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절차 등 신설(안 제 25조)
- 라. 자동차제작자등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책임 등 규정(안 제26조, 별표1)
- 마.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 결함 시정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 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규정(안 제29조, 별지 제24호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① 영 제3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 신청서와 서류”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율주행자동차 외관도
3.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 확인에 필요한 서류
5.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된 서류(「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

차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형식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6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성능인증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서류

3.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가능영역의 축소

2.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장치의 변경으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변경

3.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의 변경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자료

나. 영 제43조제4호의 자료

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타이어, 모델연도, 변속기, 원동기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의 변경

③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성능인증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신고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서류

3. 신고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①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의 변경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

식에 따른다.

제25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신규등록 후 6개월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정기검사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가 정기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정기검사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26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리적, 시간적, 기상·통신환경, 운행최고속도 등 운행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한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설정한 조건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해야 한다. 다만,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착해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각각의 30초 이상의 시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2.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3. 지정된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4. 충돌위험 또는 사고 발생
5. 위험최소화운행의 시작 및 종료
6. 비상운행의 시작 및 종료

⑤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2.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⑥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⑦ 영 제43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최초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및 6만 킬로미터
2. 제1호 외의 장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및 4만 킬로미터

⑧ 영 제4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다.

⑨ 영 제43조제5호에 따라 무상제공하는 자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른 자료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 계획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⑪ 이행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제작 결함의 내용
2.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 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을 공개하기 전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조치 등)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임시검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검사를 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기준 및 영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실시한다.

④ 임시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전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눈·비·안개·기온 등 기상상태
2. 지리적, 시간적, 기상·통신환경, 운행최고속도 및 그 밖에 운행 범위와 관련된 도로·교통 여건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관련된 기능의 고장 여부
4.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타이어 등의 상태
5. 통신 시스템의 상태(안전관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에

한한다)

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정상작동여부

② 영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본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전기·전자장치 중 자율주행시스템은 제외한다.

제31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8조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영 제47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면적 및 지형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상호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9의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업무

9의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적합성 승인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1]

무상제공 자료의 종류(제26조제9항 관련)

1. 자율주행시스템 고장진단을 위한 자료

가. 자료의 종류

- 1) 센서 고장진단코드(diagnostic code) 목록(코드의 명칭과 의미를 포함한다) 및 고장진단코드를 읽기 위하여 필요한 통신규약
- 2) 전지(배터리)의 최대·최소 셀 전압(전기자동차에 한정한다)
- 3) 검사 중 발생한 고장진단코드 삭제를 위한 자료(연료전지자동차에 한정한다)

나. 자료는 다음의 장치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자율주행 표시장치
- 2)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 3) 자율주행 경고장치
- 4) 자율주행 조종장치
- 5) 탑승자 안전장치
- 6) 사고기록장치
- 7) 운행가능영역 확인장치
- 8) 차로유지 장치
- 9) 속도제어장치
- 10) 최소전방안전거리 유지장치
- 11) 충돌예방장치
- 12) 사고인지장치
- 13) 경로추종장치
- 14) 차로변경장치
- 15) 자율주행시스템 감지장치
- 16) 위험최소화운행장치
- 17) 비상운행장치
- 18) 탑승자모니터링 장치
- 19) 고장감지장치
- 20) 자율주행제어기
- 21) 양방향 통신 장치
- 22) 자율주행 비상정지 장치
- 23) 그 밖에 자율주행시스템 고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치

2. 자율주행시스템의 점검, 정비매뉴얼

3. 그 밖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별표 2]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제32조제2항 관련)

1.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에 관한 업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에 관한 업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
10.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안전운행 조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11.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제출한 안전조치 점검결과에 관한 업무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요청,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상황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1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관한 업무
15.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 변경 등에 관한 업무

성능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유형	☐ 형식확인 ☐ 제작검사		
자동차	차명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차종		차대번호
	자율주행 유형 ☐ 1형 ☐ 2형 ☐ 3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제작검사	대수		
	차대번호 내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최초 성능인증인 경우 형식확인과 제작검사에 모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형식확인이 완료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작검사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율주행자동차 외관도 3.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4. 운행가능영역 확인에 필요한 서류 5.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공된 서류(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	→	형식확인 국토교통부	→	제작검사 국토교통부	→	성능인증서 발급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자율주행자동차 형식확인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차종	차대번호(1~8자리)
	자율주행형식번호	제원관리번호
	자율주행 유형 ☐ 1형 ☐ 2형 ☐ 3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자율주행 시스템	[표기내용(예시)] ■ 최초제작자 제원관리번호 : A08-1-00000-0000-0000 ■ 자율주행시스템 - 센서 : 종류/규격/갯수(위치) 등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 : - 그 외 자율주행시스템 중 자동차를 분해하지 않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 등을 표기 ■ 운행가능영역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형식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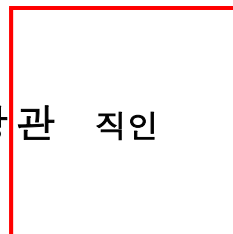
제 호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차종	차대번호
	자율주행형식번호	제원관리번호
	자율주행 유형 ☐ 1형 ☐ 2형 ☐ 3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성능인증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전 자동차	자율주행형식번호	제원관리번호
대상 자동차	차명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차종	차대번호
	자율주행 유형 ☐ 1형 ☐ 2형 ☐ 3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변경 전 자동차는 자율주행 형식이 확인된 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대상자동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변경내역은 변경사항의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3.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외관도 4. 변경 후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5. 변경 후 운행가능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	→ 변경사항 확인 국토교통부
		→ 형식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성능인증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전 자동차	자율주행형식번호	제원관리번호
대상 자동차	차명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차종	차대번호
	자율주행 유형 ☐ 1형 ☐ 2형 ☐ 3형	자율주행 운행최고속도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변경 전 자동차는 자율주행 형식이 확인된 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대상자동차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변경내역은 변경사항의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3.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외관도 4. 변경 후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5. 변경 후 운행가능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	→ 변경사항 확인 국토교통부
		→ 형식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적합성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운영 목적·용도	☐ 여객운송 ☐ 화물운송 ☐ 기타			
운영 범위				
운영 대수				
운영 자동차	제작자	차명	성능인증번호	차대번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운행예정구역에는 운행 노선의 행정구역을 기재하며, 다수 행정구역인 경우 해당되는 모든 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2. 운행 예정 자동차가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3.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계획서 4.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5. 운행예정구역에서의 사전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전담기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운행계획 등 확인	→	적합성 승인 평가결과 검토	→	적합성 승인서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 쪽)

적합성 승인서				
소유자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적합성승인번호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용도				
운행최고속도				
운행 범위				
기타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u>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주의사항</u>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다른 도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목적·용도 및 범위 외에서 운행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안전운행조치 없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뒤 쪽)

[illegible]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변경대수					
변경 대상 자동차	제작자	차명	성능인증번호	적합성승인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변경 대상자동차에는 적합성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변경사유는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3. 변경내역은 변경사항의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변경 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수수료		
	2.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적합성 승인서	전담기관이 정 한 금액		
3.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	→ 변경사항 확인 국토교통부	→ 적합성 검토 국토교통부	→ 적합성 승인서 발급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변경대수					
변경 대상 자동차	제작자	차명	성능인증번호	적합성승인번호	차대번호
변경사유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 승인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1. 변경 대상자동차에는 적합성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변경사유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3. 변경내역은 변경사항의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류	1. 변경 계획이 반영된 운행계획서	수수료
	2. 시행령 제38조제6항의 적합성 승인서	전담기관이 정 한 금액
	3. 변경하려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토교통부	→	변경사항 확인 국토교통부	→	변경신고 수리 국토교통부	→	적합성 승인서 발급 국토교통부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				
소유자	법인명(대표자)			
	주소			
자율주행 자동차	차명		등록번호	
	차대번호		적합성승인번호	
사고 내용				
사고일시 및 장소				
명령 사항	명령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발생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주 : 임시검사를 받으려면 이 명령서를 전담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u> <u>증) ① 영 제36조제4항에서 “국</u> <u>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u> <u>증 신청서와 서류”란 별지 제15</u> <u>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서</u> <u>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u> <u>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u> <u>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u> <u>원표</u> <u>2. 자율주행자동차 외관도</u> <u>3. 자율주행시스템의 구조 및</u> <u>기능 설명서</u> <u>4.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u> <u>영역 확인에 필요한 서류</u> <u>5.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u> <u>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자</u> <u>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u> <u>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u> <u>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u> <u>인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u> <u>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u> <u>는 경우에 한한다)</u> <u>6.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u> <u>항에 따라 제공된 서류(「자</u>

<신 설>

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4
의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형식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
른다.

③ 영 제36조제8항에 따른 성능
인증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
른다.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
증 및 신고 등) ① 영 제37조제2
항에 따른 성능인증 변경신청서
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르며,
성능인증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
행자동차에 대한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

호의 서류

3.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가능영역의 축소

2.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화장비,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장치의 변경으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이 없는 단순 변경

3. 자동차제작자등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의 변경

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자료

나. 영 제43조제4호의 자료

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타이어, 모델연도, 변속기, 원동기 최고출력 및 연료소비율의 변경

③ 영 제37조제5항에 따른 성능

<신 설>

<신 설>

인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르며, 성능인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확인서
2. 신고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에 대한 제21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서
료
3. 신고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
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8조제6항에 따른 적합
성 승인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
의 변경) ①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② 법 제4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법인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의 변경

2.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기검사) 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신규등록 후 6개월마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간의 기산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정기검사를 신청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

<신 설>

다.

③ 정기검사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車庫地)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행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가 정기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그 밖에 정기검사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제26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에 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리적, 시간적, 기상·통신환경, 운행최고속도 등 운행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한계
3.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

행을 위해 자동차제작자등이
설정한 조건

4.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영 제4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
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
야 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및 자
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
하게 장착해야 한다. 다만, 사고
기록장치 장착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착해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각
각의 30초 이상의 시간 동안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1.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2.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

3. 지정된 운행가능영역의 이탈

4. 충돌위험 또는 사고 발생

5. 위험최소화운행의 시작 및 종료

6. 비상운행의 시작 및 종료

⑤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소형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2.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⑥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⑦ 영 제43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최초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및 6만 킬로미터

2. 제1호 외의 장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및 4만 킬로미터

⑧ 영 제43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성능인증을 받아 판매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

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⑨ 영 제43조제6호에 따라 무상 제공하는 자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에 따른 자료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 계획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⑪ 이행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⑬ 제1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신 설>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
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
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로서 같은 종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
의 문제

② 자동차제작자들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결함(이하 “제작
결함”이라 한다)을 안 날부터 3
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
하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
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
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
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
지해야 한다.

1. 제작 결함의 내용
 2. 제작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 부서
 4.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자동차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 계획 및 내용
 6.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을 공개하기 전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결함을 시정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제작 결함의 시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신 설>

<신 설>

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 내에 자동차제작자들에게 제작 결함의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들은 지체 없이 제작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제28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 조치 등)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6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임시검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검사를 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기준 및 영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신 설>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시설
· 장비 · 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
한 설비를 갖춘 곳에서 실시한
다.

④ 임시검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전 안
전점검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
로 한다.

1. 눈 · 비 · 안개 · 기온 등 기상
상태

2. 지리적, 시간적, 기상·통신환
경, 운행최고속도 및 그 밖에
운행 범위와 관련된 도로 · 교
통 여건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과 관
련된 기능의 고장 여부

4. 제동장치, 조향장치, 조명, 타
이어 등의 상태

5. 통신 시스템의 상태(안전관
리자가 탑승하지 않는 자율주
행자동차에 한한다)

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정
상작동여부

<신 설>

<신 설>

② 영 제4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본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전기·전자장치 중 자율주행시스템은 제외한다.

제31조(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48조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영 제47조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제32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 시스템) ①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
구의 위치, 면적 및 지형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
운송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
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10조에 따른 화물자동
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
0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
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2에 따
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자동차
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
보처리조직과 상호연계하여 운
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자율주

행자동차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